

# 돼지고기 수출 종합대책 주요내용

– 농림수산부 제공 –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14일 돼지고기 수출을 신경제 국제화전략 차원에서 본격 추진키로 하고, “돼지고기 수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93년에 1만1천여톤에 불과한 돼지고기 수출을 ’97년에 3만톤, 2000년에 6만톤, 2003년에 10만톤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돼지고기 전문 수출단지 조성, 돼지고기 수출업체 육성, 식육 기술 훈련원설치 등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돼지고기 수출 종합대책 중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주).

## I. 돼지고기수출 현황 및 여건전망

### 1. 대일 수출현황

#### 가. 돼지고기 수출동향

- '93 수출실적 : 11,329톤 ('92대비 33.4% 증가)
- 수출금액기준 : 64,486천 \$ ('92대비 47.1% 증가)
- ※ 연도별 수출물량(천톤) :
  - (’88) 7.9 → (’89) 12.3 → (’91) 3.6 → (’92) 8.5
- ※ 연도별 수출금액(백만 \$) :
  - (’88) 41 → (’89) 58 → (’91) 21 → (’92) 44
- ’93 수출업체 및 수출 추진체계
  - 수출업체 : 미원농장, 논산축협, 롯데햄·우유등 22개업체

<표1>연도별 대일 수출동향

		'88	'89	'90	'91	'92	'93
수출실적	물량(톤) (전년대비)	7,936 (252%)	12,277 (155)	5,877 (48)	3,564 (61)	8,493 (233)	11,329 (134)
	-냉장육	165	46	315	769	829	1,422
	-냉동육	7,771	12,231	5,562	2,795	7,664	9,907
	금액(백만 \$)	40.7	57.6	31.7	21.3	43.8	64.5
	수출업체수	22	14	22	12	18	22
수입량(톤)	-	-	3,782	17,708	-	-	
국내가격(원/kg)	1,864	1,614	2,584	2,743	2,023	2,151	

(주)수출검역실적임

– 참여농가 : 약 860여 농가(수출원료돈 생산계약 기준)

– 수출추진체계

- 양돈농가는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원료돈(110kg) 생산

- 수출업체는 수출원료돈을 구매하여 자기책임으로 도축·가공·수출추진

- 돼지고기 수출부위 및 냉장육 수출비중

- 수출규격돈의 정육생산량(48.9kg) 중 안심, 등심, 어깨등심 등 3~4개부위(13.6kg) 수출

- 잔여육(35.3kg)은 국내시판 또는 육가공품 원료육으로 사용

- 수출가격이 비싼 냉장육 수출비중 점차 증가추세 : ('92) 10% → ('93) 12%

## 2. 돼지고기 수출여건 전망

### 가. 주요 수출 및 수입국의 생산비 비교('92기준)

	한국	미국	덴마크	대만	일본
생산비(천원/90kg) (한국기준비교)	124 (100)	76 (63)	90 (73)	107 (86)	140 (113)

### 나. 일본시장 동향 및 주요 수출국의 수출여건 전망

#### (1) 일본시장의 동향

- '71년도 돼지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국내 수급상 부족분을 수입
  - 연도별 수입량 : ('90) 343천톤 → ('91) 413 → ('92) 473(총수요의 30% 수준)
  - 수입량 증가요인 : 수요증가, 국내 돼지사육두수 감소, 가공인력 부족
- 주요수출국('92기준) : 대만 204천톤(43%), 덴마크 149(32%), 미국 67(14%), 한국 8(2%)
- 냉동육 위주에서 냉장육 수입으로 전환 추세
  - 냉동육과 냉장육간의 가격차별화가 정착되어 냉장육이 고가로 유통(20% 비쌈)
  - 냉장육 수입비중 : ('90) 10.8% → ('91) 14.8 → ('92) 24.1
- 향후 수입여건 전망
  - 최근 돼지값 하락세 및 경기침체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감소, 쇠고기 수입개방('91)에 따른 우육소비량 증가등으로 돼지고기 수입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

## II. 돼지고기 수출촉진 대책

### 1. 기본방향

#### 가. 기본방침

-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통해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수출목표 : '97년 3만톤(1.6억 \$), 2003년에 10만 톤(5.5억 \$)

	'93	'94	'95	'96	'97	2000	2003
물량	11.3천톤	14	18	23	30	60	100
금액	65백만 \$	77	99	126	165	330	550

### 나. 추진방향

#### ○ 수출단지를 지정하여 품질이 균일화된 수출규격돈 생산체계 확립

- 양돈조합,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등을 수출단지로 지정 육성

- 종돈, 사료, 사양관리기술 지도등을 통일하여 생산비절감 및 돼지고기 품질 향상

○ 돼지고기 수출업체 육성으로 수출의욕 고취

○ 돼지고기수출 전문도축·가공시설 및 식육기술훈련원 설치로 도축이후의 처리과정에서의 돼지고기 품질 향상

○ 대일 수출시장개척 활동 적극 추진 및 돼지고기수출 유공자 포상 실시

## 2. 세부추진 계획

### 가. 수출단지 지정·육성

#### (1) 수출단지의 개념 및 자격요건

##### ○ 수출단지의 개념

- 생산자단체등이 일정수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사양관리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생산된 수출 규격돈을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추진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도축·가공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조직

- 정부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생산자단체등을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년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 수출단지의 자격요건

- 지정대상 : 생산자단체(축산업협동조합 및 동 종 앙회, 영농조합법인), 한국냉장, 정부지정 계열화업체

##### - 자격요건

• 수출단지는 상시 사육규모 300두이상을 사육하는 양돈농가 15호이상으로 조직화하되 최소 2만두이상의 사육두수를 보유

다만, 단지구성농가는 가급적 55세 이하(56세 이상일 경우에 자녀가 같이 양돈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의 양돈농가로 구성되어야 함.

• 수출단지주체는 돼지 사양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단지구성농가에 대한 사양 기술 지도 실시

## (2) 수출단지의 유형 및 의무사항

### ○ 수출단지의 유형

- I 유형 : 수출단지는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수출업체는 도축·가공하여 수출
- II 유형 : 수출단지는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일부 물량은 자기책임으로 도축·가공하여 수출을 추진하고, 잔여물량은 수출업체에 판매(도축·가공·수출은 수출업체가 추진)
- III 유형 : 수출단지는 수출규격돈을 생산·도축·가공하여 수출추진

### ○ 수출단지의 의무사항

- 수출단지 관리에 필요한 정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종돈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종돈장과 연계하여 단지구성농가에서 우수한 동일 종돈공급
- 사료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사료공장과 연계하여 단지구성농가에게 동일 양돈사료공급
- 사양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및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단지구성농가에게 동일한 사양기술지도 실시
- 수출단지는 매년 단지총사육두수의 80% 이상 물량을 수출하도록 최대한 노력
- 수출단지는 총사육두수를 '97년까지 4만두, 2000년까지 6만두 규모로 확대

## (3) 수출단지 지정

### ○ 수출단지 지정절차

- 수출단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등은 향후 5년간('94~'98)의 연도별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
- 시·도는 단지주체 및 농가를 현지 확인 후 동 신청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시·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단지 지정을 농림수산부에 건의(시·도의견서 첨부)
- 농림수산부는 수출단지지정 신청내용과 시·도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단지로 지정

### ○ 예비 수출단지의 지정

- 수출단지가 돼지 사양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비 수출단지로 지정
- 예비 수출단지가 6개월 이내에 동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지 구성농가에 대하여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출단지로 지정

- 예비 수출단지지정 절차는 수출단지와 동일

### ○ 수출단지지정 우선 순위

- '93년 수출실적(직수출 또는 대행수출)이 많은 조직
- 연도별 총수출목표 및 냉장육 수출목표가 많은 조직

- 수출단지의 총구성농가수 및 55세이하의 구성농가 수가 많은 조직

- 사업소요자금이 적고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이 많은 조직

- 국내시판 돼지고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조직

### ○ 수출단지의 의무사항 불이행시의 조치

-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수출단지의 업무를 검사하고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수출단지지정 취소를 농림수산부에 건의

- 농림수산부는 시·도의 건의를 검토하여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

- 수출단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수출단지에 주어지는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 (4)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 (가) 지원사업 메뉴

① 단지구성농가, 자체 또는 연계종돈장의 사육시설 개선 지원

• 기존축사의 시설개선 및 증·개축, 사료저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

• 신규 양돈단지조성은 수출단지 지정후 2차년도 ('95년이후)부터 사업비 우선지원

• 양돈단지조성 사업계획은 축산단지(양돈단지)조성사업 기준에 의거 신청

② 사료생산시설개선 지원

• 수출단지가 기 보유한 사료생산시설개선 자금지원

• 사료공장의 신규설치는 수출단지 지정후 2차년도부터 사업비 지원

• 사료공장의 시설규모는 초소한 1일 80M/T 이상 생산능력 보유

• 부지구입, 법적 제한사항 해소후 사업비 신청시 우선 지원

- 2~5개 수출단지 또는 단지구성농가가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만들어 추진할 경우 우선 지원

#### ③도축·가공시설개선 지원

- 자체 또는 연계된 도축·가공시설개선 자금지원
- 도축·가공시설의 신규설치는 수출단지 지정후 2차년도부터 사업비 지원

- 도축장의 시설규모는 최소한 돼지 600두/일 도축 능력 보유

- 부지구입, 주민동의 및 법적 제한사항 해소후 사업비 신청시 우선지원

- 2~5개 수출단지 또는 단지구성농가가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만들어 추진할 경우 우선 지원

#### ④수출단지 육성자금 지원

- 현행 수출원료돈 생산농가 구조개선 자금을 수출단지 육성자금으로 전환

- '93년 지원-수출원료돈 생산농가에게 두당 10천 원 보조('93예산 100억원)

- 수출원료돈을 105kg이상 사육함에 따른 지육경락 가격 하락분 손실보전

#### ○수출단지육성자금 보조지원 계획

##### - 지원기준

- 수출단지(예비단지 포함)에 참여한 농가 : 수출원료돈 두당 10천원

- 수출단지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 : 수출원료돈 두당 8천원

※ 수출원료돈 생산농가가 계열화업체인 경우에는 계열주체와 수탁사육농가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

※ '95년부터 수출원료돈 두당 지원액은 점진적으로 감축

##### - 지원방법

- 수출단지에 참여한 농가 : 수출단지주체를 통해 일괄 지원

-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 생산자단체(지역축협, 양돈업조합)를 통해 일괄 지원

#### ⑤수출잔여육 유통개선 지원

- 수출업체인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수출잔여육 유통 개선 자금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수출업체 육성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 ⑥국내 시판돈육 브랜드화 및 직판장 설치지원

- 수출단지주체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자체 브랜드로 소매유통에 참여할 경우 동 직판장설치 자금지원

##### (나)사업비 지원조건

- 수출단지 구성농가 및 종돈장의 사육시설개선 자금

##### - 개별농가의 사육시설개선 사업

- 지원기준 : 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 다만 개인은 2억원,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신규 양돈단지 조성사업 : 일반 축산단지조성 사업비 지원기준 적용

- 수출단지주체에 대한 지원자금

##### - 도축·가공시설개선 사업

- 지원기준 : 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 년 3%, 기타단지주체 년 5%, 3년거치 7년상환(신규사업)

##### - 사료생산시설개선 사업

- 지원기준 : 사업비의 30% 융자, 70% 자부담

- 지원기준 : 년리 8%, 3년거치 7년상환

- 수출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사업비 이외의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음

#### (5)'94수출단지 지정·육성계획

- '94년에 수출단지 40개소(수출단지 12개소, 예비 수출단지 28개소)를 지정하여 2003년 10만톤 달성을 기반구축

-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출단지의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필요한 자금을 지원·육성

- '94수출목표 : 14천톤(수출단지에서 7천톤 수출)

<2003년 수출목표 10만톤 달성 방안>

- 두당 수출물량 증대 : 13.6kg→21.4kg

- 수출단지의 사육두수 규모 확대 : ('94)25천두/단지→('97)40→(2001)60

- 단지구성농가의 사육두수 규모 확대 또는 단지구성농가 신규 확보

#### (6)수출단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요령

- 수출단지의 향후 5년간('94~'98)의 연도별 수출

## 목표 설정

○ 동 수출목표달성을 위한년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94~'95년도의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96~'98년도의 사업계획서는 개략적으로 작성

- 수출단지 구성농가가 '94이전에 선도양축농가, 축사시설개선, 종돈장시설 개선등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지원금액에서 융자잔액을 공제한 만큼만 지원 가능

- '94년에 수출단지구성농가 및 연계 종돈장이 사육시설개선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4수출단지 사업계획에 반영 신청

- 수출단지가 신규 양돈단지(집단화)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단지의 사업계획('94~'98)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매년 동사업예산은 일반 축산단지(양돈단지) 사업으로 별도 신청

- 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사업과 자체 추진사업으로 구분작성

- 정부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은 5년간 균형있게 안배

• 단지구성농가의 사육시설개선사업은 '97년까지 최소한 4만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 자부담에 대한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94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정

- 수출단지지정을 희망하는자는 '94. 3월말까지 향후 5년간의 사업추진 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94. 3월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94. 6월말까지 신청가능('95년부터 지원)

- 시·도지사는 동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고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 4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

- 농림수산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4. 5월 말까지 수출단지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94 지원계획 확정

## 나. 돼지고기 수출업체 육성

### (1) 지원사업 메뉴

① 수출업체 육성자금 지원

○ 현행 돼지고기 수출잔여율 유통개선 자금을 수출

### 업체 육성자금으로 전환

- '93년 지원 : 8,640백만원 지원(13개 수출업체), 년리 5%, 융자기간 1년

○ 수출업체 육성자금 지원계획

- 수출업체(자체 가공장을 보유하고 자기책임으로 도축·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출잔여율 유통개선 자금으로 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냉장육 1,000천원/톤, 냉동육 700천원/톤

• 지원조건 : 년리 5%, 융자기간 1년

② 수출업체의 도축·가공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자금 : 냉장육가공시설에 우선 지원

- 자체 또는 연계된 기존도축·가공시설개선 자금

- 자체 가공시설 신규설치 자금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

- 지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상환(신규사업)

### (2) 수출업체 자금지원 우선 순위

○ 총수출물량의 50% 이상 수출단지의 수출원료돈을 구매하는 수출업체

○ '93 냉장육 수출실적이 많은 수출업체

○ '93 총 수출실적이 많은 수출업체

### (3) '94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요령

○ 수출업체는 '94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4. 3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수출업체가 수출단지인 경우에는 수출단지지정신청시년도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 연계된 도축장의 시설개선계획은 가장 많은 수출물량을 도축하는 수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시·도지사는 동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 4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

○ 농림수산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4. 5월 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수출업체와 지원금액 확정

## 다. 돼지고기 수출전문 도축·가공시설 설치

○ 권역별로 수출 전문도축장과 가공장을 설치하여

## 위생적이고 품질좋은 돼지고기 수출

### ○ 설치 방안

- 중부권 : 한국냉장의 중부종합육가공장을 활용

- 도축능력 : 돼지 1,500두/일(년간 5,500톤 수출가능), 총사업비 337억원(기금 236)

- '92.10월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94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

- 호남권 : 축협중앙회의 김제 종합육가공장을 활용

- 도축능력 : 돼지 2,000두/일(년간 7,000톤 수출가능), 총사업비 360억원(기금 180)

- '93. 3월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94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

- 영남권 : 부산·경남양돈조합의 김해 축산물공판장을 활용

- 도축능력 : 돼지 2,000두/일, 총사업비 100억원(기금 80)

- 수출용 도축물량을 병행처리 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작업중('95년말 준공예정)

- 경기·충남권 : 경기도 남부지역에 축산물 종합유통단지를 만들어 수출전용도축장 설치

-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정 작업 추진중

- 경기도 주관으로 '94년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추진

- 기타 권역 : 경북은 고령 축산물공판장, 전남은 나주 축산물공판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수출전문도축장의 기능을 수행토록 조치

## 라. 식육기술훈련원 설치

○ 냉장육 수출체계 확립, 육류등급제 실시, 한우전문점 설치 등 육류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식육의 위생처리·가공등을 담당하는 전문기능인력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없음

- 일본은 1973년 식육학교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식육처리 기능사를 양성하여 식육유통을 현대화

- 기초교육과정(1년), 전문교육과정(식육점포과, 식육가공과 각 3.5개월)을 설치하여 년간 약 70명의 전문 기능인력 배출

### ○ 식육기술훈련원 설치계획

- 위치 :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축협연수원 부지

- 시설규모 : 건평 900평, 총사업비 45억원

- 사업기간 : '94~'96

- 교육훈련 실시 : '97년

- '94년중에 훈련시설설치 계획,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식육기술훈련원설치 이전('94~'96)의 식육기술 훈련 실시

- 훈련기관 : 축협중앙회

- 훈련기간 : 1~2개월 정도

- 훈련인원 : 수출돈육가공인력, 한우전문점의 육류발골·판매인력 등 년간 약 180명

- 소요경비부담 : 축산발전기금 보조 및 식육훈련 학생 자부담

※ '94.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4하반기부터 교육훈련 실시 예정

## 마. 대 일본 시장개척 활동 적극 추진

○ 일본 소비자의 돼지고기 기호도등 수출시장 여건 조사 및 우리 돼지고기의 우수성 홍보등 시장개척활동 적극 추진

○ 이를 위해 '93. 12. 18일 한국육류수출협회가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정회원자격을 축협,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수출업체, 사료생산업체, 동물약품업체, 축산기자재업체, 법인양축농가등으로 한정하여 대한양돈협회와 기능 중복 방지

○ 육류수출협회를 중심으로 덤플방지등 자율적인 수출질서 확립

## 바. 수출단지 평가회 개최 및 수출유공자 포상 실시

○ 매년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실시

-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의 사기 양양으로 수출 촉진

○ 수출규격돈 및 수출돼지고기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농가 및 종돈장에 대한 포상 실시

- 우수 농가의 사육방법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대 농가지도 교육자료로 활용